서울특별시 강남·여의도글로벌비즈니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스템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63 2012년 10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2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8월 21일

다. 상 정 일 자: 제24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12년 10월 9일 상정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 강남·여의도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서울특별시 글로벌도시 촉진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외국인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시설로서
- 주요 위탁사무는 강남·여의도글로벌비즈니스센터 관리·운영과 소자본 외국인 경제활동 종합 지원, 외국인 생활상담 및 행정민원 지원, 외국기업인 네트워킹 및 커뮤니티 공간 제공 등 외국인 경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며.
- 위탁기간은 2년(2013. 1. 1. ~ 2014. 12. 31)임.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양재대)

1) 위탁사무의 개요

- 본 동의안은 강남 및 여의도 글로벌비지니스센터 운영법인의 위탁기간이 만료(예정)됨에 따라 동 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향후 2년 동안에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¹)에 의거해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 시장이 상기 글로벌비지니스센터에 위탁하려는 사무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관리·운영
 - 소자본 외국인 경제활동 종합 지원(비즈니스 상담, 창업지원, 인 큐베이팅 시스템 운영, 교육·세미나, 비즈니스 편의서비스 제공)
 - 외국인 생활상담 및 행정민원 지원 사업
 - 외국기업인 네트워킹 및 커뮤니티 공간 제공 사업
 - 기타 외국인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민간위탁 지속여부에 대한 검토

○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외국인의 비즈니스 활동 및 창업지원을 위해 설립되었고, 2010년 3월 강남글로벌비즈니스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2011년 9월에는 여의도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추가 운영하고 있음.

¹⁾ o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4. (생략)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주요업무는 외국인 경제활동에 대한 종합지원 및 생활상담, 외국 인기업인간의 네트워킹 및 커뮤니티 공간 제공과 금융·법무·세무· 부동산 상담에 이르기까지 외국인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정민원 지원업무를 수행해왔음.
- 상기시설에 대한 운영 관련 업무는 그동안 경제진흥실 외국인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이었으나, 2012년 9월 28일자 서울시 조 직개편에 따라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업무로 편제되었음.
- 상기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 위탁하려는 사무는 한국의 기업경영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경제·창업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공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 친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기반으로 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 간의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상기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운영 사무는 현재와 같이 민 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참고로, 본 동의안에 따르면 상기 강남 및 여의도 글로벌비즈니 스센터 모두는 현재 재단법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위탁운영 중인데, 향후 2년 동안에도 동 법인에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수탁기관선정 관련사항은 금번 시의회 동의절차가 끝난 이후에 소관부서의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수탁기관에 대하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최종 평가를 거쳐 확정되는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특정 법인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서의 타당 사유 등을 제시하는 것은 민간위탁 지속여부를 판단하는 본 동의안의 취지와 맞지 않음.
- 더욱이 이처럼 특정 위탁법인을 염두에 둔 집행부의 행정행위는 앞으로 진행하게 될 적격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상당부분 영향을 줄 수 있고, 동 심의절차를 형식적 요식행위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동의안 제출 및 적격자심의시 이점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임.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 5. 토론요지 : 없음.
-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여의도글로벌비즈니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963

제출년월일: 2012년 8월 17일 제 출 자: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강남·여의도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서울특별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외국인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시설로서.
- 나.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외국인에 대한 경제 및 창업활동 지원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개요

1) 강남글로벌비즈니스센터

○ 시 설 명 : 강남글로벌비즈니스센터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 코엑스 2층

○ 시설규모 : 85.68m² (전용면적)

○ 개관일자 : 2010.05.17

2) 여의도글로벌비즈니스센터

○ 시 설 명 : 여의도글로벌비즈니스센터

○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 IFC타워 원빌딩 3층

○ 시설규모 : 141 m² (전용면적)

○ 개관일자 : 2012.01.12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년 (2013.01.01 ~ 2014.12.31)

- 위탁업무
 - 강남·여의도글로벌비즈니스센터 관리·운영
 - 소자본 외국인 경제활동 종합 지원(비즈니스 상담, 창업지원, 인큐 베이팅 시스템 운영, 교육·세미나, 비즈니스 편의서비스 제공)
 - 외국인 생활상담 및 행정민원 지원 사업
 - 외국기업인 네트워킹 및 커뮤니티 공간 제공 사업
 - 기타 외국인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소요예산 : 602,646천원(2012년),668,599천원(2013년 예정)
- 수탁기관 : (재)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재계약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글로벌도시 촉진조례 제8조,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 17조
- 민간위탁 추진현황

- 강남글로벌비즈니스센터(1차) : 2010.03.02 ~ 2011.12.31 (1 년10월, (재)서울산업통상진흥원)
- 여의도글로벌비즈니스센터(1차) : 2011.09.14 ~ 2011.12.31 (4월, (재)서울산업통상진흥원)
- 강남·여의도글로벌비즈니스센터(2차) : 2012.01.01 ~ 2012.12.31 (1 년, (재)서울산업통상진흥원)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및 (재)서울산업통상진흥원 위탁사유

-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경제·창업활동에 필요한 정보, 공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 친밀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전문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가 운영하는 것 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전문성과 함께 외국인 비즈니스 지원사업의 효과성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통한 외국인의 국내 창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계속 위탁함이 타당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글로벌도시 촉진조례 제8조, 제10조
 - 제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① 시장은 제6조(외국인주민 생활 환경개선) 각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할 때 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 관 사무 중 조사· 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의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서울특별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7조
 - 제5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영·기술·정보 지원, 2. 인력·자금·판로등 종합지원, 3. 창업정보제공, 4. 첨단산업 기술진흥 지원, 5.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기업화 지원, 6. 중소기업지원시설의 관리·운영, 7. 중소기업 애로사항 상담, 8.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9. 기타 중앙정부가 위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
 -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단에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